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가단1174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성

변 론 종 결 2021. 11. 23.

판 결 선 고 2022. 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799,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A은 원고에게 47,799,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식회사 C와 피고 B 사이의 2016. 12. 9.자 47,799,790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47,799,7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1. 10. 10. 서울 송파구 D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전부 159.69㎡(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5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통신기기 판매업을 시작하였는데, 2008. 4. 30. E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E는 C에게, 2012. 12. 18.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2016. 12. 7. 다시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C의 각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였다.

나. 그리고 C은 2016. 12. 9. 피고 B의 은행계좌로 36,987,750원, 10,812,040원 합계 47,799,79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인 2016. 12. 9. E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2. 9.부터 2017. 12. 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때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시작하였다(피고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2016. 12. 14. 마쳤다). 이후 E는 2016. 12. 12. C의 G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여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다. C은 2017. 2. 21. 이자연체로 부실 처리되었고, 원고는 C을 대위하여 2017. 4. 6. C의 채권자인 H은행에게 161,189,817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C 및 피고 A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1434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16. 위 법원으로부터 ‘C 및 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329,822원과 그 중 160,329,587원에 대하여 2017. 4.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며, 그 지급명령결정정본이 C 및 피고 A에게 2017. 6. 22. 송달된 후 2017. 7. 7.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A은 2013. 6. 24.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적어도 2015년 C이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부터 C의 대표자였으며, 피고 B는 피고 A의 조카이다. 그리고 C은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C의 대표자인 피고 A은 2016. 12. 9.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C의 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C은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 그런데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이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 A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47,799,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청구

피고 A의 조카인 피고 B는 위와 같은 피고 A의 횡령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C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47,799,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B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C이 이 사건 금원을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과 피고 B 사이의 2016. 12. 9.자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47,799,790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 퇴직금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C이 피고 B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퇴직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은 C에 2002. 10. 14. 입사하여 2016. 12. 15.까지 근무한 피고 B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소득 중 일정 세금을 공제한 퇴직금이므로 피고 A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퇴직금 지급이므로 사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대한 G은행, I은행의 각 회신결과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사업장을 본점으로 하여 운영되다가 2016. 12. 8.경 본점을 '서울 송파구 J'으로 이전하였지만 이 사건 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하는 지점을 두고 있는 사실, C이 이 사건 금원 지급 이후인 2020. 3. 16. 폐업한 사실, 피고 B가 자신 명의의 F을 설립한 이후인 2016. 12. 20. 피고 A으로부터 2,24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는 사실, 2017. 1. 25.부터 2019. 9. 26.까지 사이에 'I B', 'I B급여', 'I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략 2,800,000원 내지 2,900,000원 상당의 돈이 피고 B 명의의 G은행 계좌(F 사업자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거의 매달 입금된 사실, 피고 B가 2019.

5. 14. C의 계좌로 공인인증수수료인 4,400원을 송금한 사실, 2017년 2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피고 B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서 피고 A 및 그의 배우자인 K의 계좌로 적게는 20,000원부터 많게는 9,100,000원까지 수시로 출금이 된 사실, 피고 B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서 피고 A의 장모인 L에게 이자조로 돈이 매달 나가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보면 조카이자 직원인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피고 A이 통신기기 판매업을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면이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A이 C의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거나 C이 피고 B에서 이 사건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C이 피고 B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피고 B의 근로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B는 2002. 10. 14. C에 입사하여 2016. 12. 15. 퇴사함으로써 근속월수가 171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의 위 근무사실에 대하여는 원고 역시 다투지 않고 있으며, 2002년경부터의 피고 B의 주소지나 피고 B의 가족 사진, 제출된 2003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고 B가 C으로부터 받아 온 월급여 내역 그리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제반 서류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② 그런데 피고 B가 위 근무기간 동안 C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거나 일부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2016. 12. 15. 퇴직 시 그 동안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이 피고 B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점은 분명하다.

③ 위와 같이 피고 B가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C에서 통신기기 판매업에 종사해 온 경력이나 임대인인 E와의 친분 등에 비추어 C을 퇴사하면서 받을 퇴직금을 기초 자금으로 하여 기존 영업장이었던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한 후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자신 명의의 통신기기 판매사업장을 개설하려고 하였다는 피고 B의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④ 또한 피고 B가 본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급여’라는

취지의 명목으로 매달 송금한 사실이 있고 작은 아버지인 피고 A이나 그의 배우자인 K과의 빈번한 금전거래 사실이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피고 A이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사업자계좌에서 아내가 사용할 생활비계좌로 일정 금액씩 이체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특정하기 위하여 ‘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거나, 피고 A과의 오랜 관계상 수시로 피고 A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 A이 처인 K과 함께 이후 운영하게 된 ‘M’이나 ‘N’에 단말기 운송을 맡기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C이 피고 B에서 근로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이 C의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 B가 피고 A의 횡령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C에 대하여 갖는 퇴직금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므로, C이 피고 B에게 퇴직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C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B의 월급여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산정이 상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